

문서번호	가족담당관-448	시 민			
결재일자	2017. 1. 6.	주무관	아동복지권리팀장	가족담당관	여성가족정책실장
공개여부	비공개(5)				
방침번호					

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



2017. 1

여성가족정책실
(가족담당관)

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갈 등	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지역아동센터
사 회 적 배 려	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아동
선 거 법	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안 전	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 기 관	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
2017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

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·지원을 통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□ 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9조(비용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(비용보조)
-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

□ 추진배경

-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·교육·급식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
-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에 대해 2004년부터 법적근거(아동복지법 제52조)를 마련하여 지원 시작

II 현황 및 추진실적

□ 현 황('16년 12월말 기준)

(단위 : 개소 / 명)

422	총 개소 수			종사자 수	이용 아동수	특성별 운영		
	운영비 지원 형태					가점형	특수 목적형	토요 운영
	국·시비 지원 (2년 이상)	시비 지원 (1년 이상~2년 미만)	국·시비 미지원 (1년 미만 신고시설)					
	402	13	7	1,018	11,487	22	53	217

□ 추진실적('10년~'16년)

○ 내용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비, 프로그램 사업비 등

(단위 : 개소 / 백만원)

구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지 원 (개소수)	296	323	349	382	408	416	422
예 산 (백만원)	12,073	17,850	22,088	23,508	31,387	32,937	33,407

III 지원계획

□ 추진체계

추진주체	기능 및 역할
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평가 기본계획 수립 ●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및 표준화 모델 개발 보급 ●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마련, 국고보조 등 사업 총괄 ●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·사업총괄 및 평가 ●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 등 ● 시설정보시스템 개편 및 관리총괄 ● 종사자 인력 교육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,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● 연구개발 및 시설 평가사업 운영 ● 시도지원단 사업조정·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● 시설정보시스템 관리지원 및 중앙지원단 전산시스템 관리 ●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
서울시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서울시지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 등 수립 ●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 지원 ●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●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 총괄 운영(뉴딜일자리) ● 방과후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 등 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시설운영 지원 ● 지역아동센터 홍보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● 지역사회 조사연구사업 및 정보관리 및 데이터 관리·운영 ● 아동복지교사 및 아동돌봄도우미 교육 지원 등 ● 특성화 사업개발 및 지원
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드림스타트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수립 ●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·운영지원 ●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·확인 ● 지역아동센터 지도·점검, 예산 지원,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등 ● 아동복지교사 채용·노무관리·사용 등 제반 업무 ●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도우미(뉴딜일자리) 채용 및 파견 등 ● 자치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기관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
지역아동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돌봄 서비스 제공 ●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지자체 협조 등

□ 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① 기본운영비(국비30%, 시비70%)

■ 2017년 주요 변경지원 사항

(단위 : 천원)

구분 (이용아동수)	상근 종사자	지원 기간	'15년 지원 기준액	'16년 지원 기준액	'17년 지원 기준액	전년대비 단가증가	비고
19인 이하	2인	12개월	월 4,020	월 4,142	월 4,188	46(1.1%)	
29인 이하	2인	12개월	월 4,230	월 4,360	월 4,409	49(1.1%)	
30인 이상	3인	12개월	월 5,568	월 5,770	월 5,871	101(1.8%)	

※ '12. 8. 5 부터 10인 미만 시설 신규설치 불가, 기존 9인 이하 시설은 '17년 월 2,552천원의 기본운영비 지원

■ 지원개요

- 지원개소 : 406개소('17.1월 기준)
- 지원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- 지원내용 : 종사자 인건비, 운영관리비, 프로그램비 등
- 지원금액 : 유형별(이용아동수별) 차등지원(상단 표 참조)
- 예 산 : 24,834,511천원

■ 지원시설 선정 기본방향

- 2016년 운영비 지원시설 중 심화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반영하여 선정
- 2015년 신규설치 시설 중 신규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
- ※ 시설 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월부터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

■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

- 선정방법 : 2017년 예산(안) 계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, 평가결과, 시설정보시스템 시설통계 자료 등을 통해 자치구 결정
- 지원기준 : 이용아동 수 및 상근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
 - 자치구 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,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

②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■ 지원개요

- 목 적 : 지역적 특성과 환경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- 지원개소 : 61개소
 - 자치구별 특수목적형으로 배정된 시설 수(붙임3) 범위내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
- 지원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- 지원금액 : 개소당 월 610천원
- 예 산 : 448,495천원

■ 지원대상

- 장애·다문화·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
- 저녁돌봄(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% 초과하는 시설),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
 - 저녁돌봄 운영지원의 경우, 사회복지공동모금회·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
- 상기 지원 대상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

■ 선정기준

-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(예시)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
 -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, 평가·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,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,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

〈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(예시) 〉

- ① 지역적·환경적,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(장애, 다문화, 새터민, 저녁돌봄,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)
-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
- ③ 평가·지자체 점검결과,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
-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

3] 토요일영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■ 지원개요

- 목 적 : '12년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
- 지원개소 : 224개소
 - 자치구별 개소수의 30~60% 내외, 토요일영으로 배정된 시설 수 범위 내 (붙임3)에서 적정운영 시설 선정
 - ※ '11년 93개 ⇒ '12년 160개 ⇒ '13년 223개 ⇒ '14년 220개 ⇒ '15년 224개 ⇒ '16년 217개
- 지원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- 지원금액 : 개소당 월 220천원
- 예 산 : 596,735천원

■ 선정기준

- 토요일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(예시)을 참조하여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(반드시 주6일 이상 운영)

〈 토요일영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(예시) 〉

- ① 토요일돌봄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타 센터와 연계가 가능한곳
- ② 이용아동 중 토요일돌봄서비스 예상 이용 아동수가 많은곳
- ③ 평가 및 자치구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고 없고 역량이 우수한 시설
-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

4] 우수 지역아동센터(국비30%, 시비70%)

- '17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의 「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(안)」이 확정된 후 지원내용 별도 안내

5]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(국비30%, 시비70%)

- 목 적 :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일자리 제공
- 지원대상 : 아동복지교사 355명
 - 자치구별 배정된 예산 범위 내(붙임4)에서 적정 인원 채용
- 선정방법 : 자치구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사·선발

○ 지원단가 : 1인당 평균 112만원 / 월

○ 지원내역

근무유형		교사분야	배정인원	기본급	보험가입	퇴직금
전일 근무교사	전일 (주40시간)	지역사회복지사	25명 (자치구별 1명)	월 1,600,000원	사회보험 전체	지급
	전일 (주25시간)	아동지도교사 기초영어교사 독서지도교사 예체능활동교사	330명	월 970,000원	사회보험 전체	지급
단시간 근무교사	단시간 (주12시간, 60시간 미만)			월 580,000원	고용 산재보험	미지급

- ※ 지역사회복지사를 제외한 전일제, 단시간 근무교사의 비율은 60:40으로 채용 권고 하나, 자치구별 예산배정 내역 및 채용상황에 따라 적정인원 채용가능
- ※ 지역사회복지사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자체 규정 등에 따라 지급 (지역사회복지사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)
- ※ 기본급에는 '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본인 부담금' 포함

- 지원방법 : 분기별 자치구 재배정(자치구는 근무일지 확인 후 매월 지급)
- 지원내용 : 1개 지역아동센터에 1~3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, 아동의 학습 지도 및 독서, 예·체능 활동 등 지원
- 지원분야 : 총 5개 분야
 - 지역사회복지사, 아동지도, 기초영어, 독서지도, 예체능 활동 지원
- 소요예산 : 4,569,600천원

6] 지역아동센터 평가비 지원(국비30%, 시비70%)

- 목 적 : 기존 및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서비스 점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역량 제고
- 지원대상 : 92개소(진입 및 심화평가 대상 시설)
- 지원내용 : 시설당 453천원
- 지원방법 :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(보건복지부 소관)로 교부
- 소요예산 : 41,676천원

7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지원(국비30%, 시비70%)

- 목 적 : 종사자 등의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 도모
- 주요사업
 - 지역아동센터·아동복지교사·아동돌봄도우미 교육 지원
 - 지역아동센터·아동복지교사 관련 평가지원, 조사, 통계 업무
 - 지역사회 아동복지 자원연계 등 종합지원체계 구축
 - 명예지역아동센터장 위촉 및 센터 매칭 등 관리업무
 - 행정회계 및 기타 서울특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 등
- 운영주체 :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(대표 전병노)
 - 협약기간 : 2016. 1. 1 ~ 2017. 12. 31(2년간)
- 인 력 : 총 5명(단장 1명, 종사자 4명)
- 소 재 지 :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4 다운빌딩 2층
- 지원방법 : '17년 사업계획서 확정 후 청구에 의거 분기별 교부
- 지원내용 :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
- 소요예산 : 326,800천원

8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(시비100%)

- 근 거 :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목 적 :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을 보완하여 아동에 대한 안정적·정서적 서비스 강화
- 지원방안 : 타 사회복지 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
- 지원현황('12년~'16년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비 고
시설장	월 130	월 160	월 190	월 220	월 220	월250	'16년 대비
종사자	월 130	월 160	월 190	월 220	월 220	월250	3만원 증액

- 지원대상 : 운영비 지원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

※ 국비 지원시설 및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로 (시비)운영비 지원결정 시설

- 지원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
※ 기존시설은 1월부터, 신규시설은 1년 이상 운영시설로 (시비)운영비 지원과 연동하여 운영비 지원 개시월부터 지원
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250천원('16년대비 3만원 증액)
- 지원방법 : 매월 종사자 급여일에 지급(자치구 대상자 신청 → 시 재배정 → 자치구서 개인별 계좌 입금)
- 소요예산 : 3,000,000천원
 - 산출기초 : 1,000명 × 250,000원 × 12개월 = 3,000,000천원

9 국비 미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(시비100%)

- 지원방안 : 설치·신고 후 1년 이상 우수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전 1년간 운영비 보조
 - ※ 국고보조 기본운영비(국비 30%, 시비 70%) 지원 원칙 : 진입평가를 통과한 시설 중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운영비 지원
- 지원기준
 - 시설 설치 및 법정 종사자 기준에 하자가 없는 센터
 - 자치구 지도 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행정처분(행정절차법 상)을 받은 센터 제외
 - 그 외 구청장이 시설 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센터
 - 위 사항을 참조하여 자치구가 선정·추천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국비 미지원 시설 10개소('17.1월 기준)
- 지원기간 : 2017년 1월 ~ 12월
- 지원금액 : 정원에 따른 금액 차등지원

(단위 : 개소, 천원)

유형별	정원	상근종사자	개소수	기준액	비 고
소규모형	19인 이하	2인	3	월 1,500	설치신고일에 따라 시설별 지원개시일 상이
표준형	29인 이하	2인	3	월 1,600	
확대형	30인 이상	3인	4	월 2,000	

- 소요예산 : 163,200천

10 지역아동센터 행사비 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지원 기준 월 현재 운영중인 전 지역아동센터(미지원 시설 포함)
- 지원내역 : 캠프 및 문예행사비(차량임차, 프로그램비용 등)
- 지원금액 : 이용 아동 1인당 16천원 상당
- 지원시기 : 2017년 3월(상반기), 10월(하반기)
- 지급방법
 - (센터)사업계획서 제출 ⇒ (자치구)검토 후 사업비 신청 ⇒ (시)사업비 교부
- 소요예산 : 368,000천원

11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% 추가지원(시비100%)

- 지원대상 : 구립지역아동센터 중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 자치구별 1개소 지원
- 지원조건 : 공립형 센터는 종사자 1명 추가 배치하여야 하며, 자치구 및 서울시지원단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연계·협력사업 추진
 - ※ 신규신청 공립형 센터의 경우 市 검토 후 예산 범위에 따라 당해 또는 익년부터 지원
- 지원내용 : 시설 유형당 기본운영비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지원
- 운영현황(*17.1월 기준)

(단위 : 개소수)

구분	성북	강북	노원	은평	서대문	구로	영등포
구립 센터(21)	4	1	10	2	2	1	1
공립형 센터(6)	1	1	1	1	-	1	1

- 소요예산 : 242,340천원

1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포인트 지원

- 시 복지정책과의 「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공통 지원기준」 준용
- 소요예산 : 164,050천원

IV 소요예산

□ 예산액 : 35,724,527천원

(국비 9,536,080천원 / 시비 26,188,447천원)

□ 사업별 내역

세부사업	통계목	금액(천원)	재원	
지역아동센터운영(국비) [기본운영비]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(307-10)	24,834,511	국비30% 시비70%	
특수목적형(국비) [특성별운영비]		969,120		
토요운영(국비) [특성별운영비]		448,495		
우수 지역아동센터(국비)		596,735		
아동복지교사파견(국비)		4,569,600		
평가 및 평가단운영(국비) [평가비 지원]	민간위탁금 (307-05)	41,676		
시도지원단 운영(국비) [서울시지원단 지원]	326,800			
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(시비) [시 자체사업]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(307-10)	3,937,590	시비100%	
내역 사업		종사자 처우개선비		3,000,000
		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(국비미지원)		163,200
		아동행사비 지원		368,000
		공립형센터 기본운영비 50% 추가지원		242,340
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	164,050		

V 행정사항

□ 서울특별시

-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본계획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, 예산 지원
- 지역아동센터 관련 주요정책 계획 수립·시행 등

□ 자치구

- '17년 변경된 지침 참조하여 세부 운영계획 수립·시행
 - 기본운영비 기준액 변경 등에 따른 지원시설 선정기준 수립 및 지도·점검
 - 특수목적형,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등 선정·관리

○ 지역아동센터 파견 인력 관리

- 아동복지교사 관련 직접 채용 및 배정, 관리
- 뉴딜일자리 아동돌봄도우미 채용 및 배정, 관리('17.4월~'17.11월 운영예정)

□ 지역아동센터

- 보건복지부·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운영
-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·정산 등

□ 기타 세부사항은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사업안내
(보건복지부 지침) 준용

- 붙임 1.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1부(보건복지부)
2.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 3. 2017년 특수목적형 및 토요일운영 자치구별 배정내역(시설수).
 4. 2017년 아동복지교사 자치구별 예산 배정 내역. 끝.